

이상 잡는 것이 가능하다면 충돌된다. 그 경우 어떻게 하나 국내학자들은 후법우선이라 해서 국내법이 우선에 있다는 원칙을 취한다.

국제인권규약인 B규약은 어떠나?

내국학자들 B규약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실제 서울대 백충현교수의 글을 보면 그런 뉘앙스 있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보다 물론 위에 있고 헌법과 같다. 어떤 입장에선 헌법을 보완하는 입장에 있다고 본다. B규약은 조약을 체결하는 즉시, 조약에 어긋나는 제도라든가 법적 규범은 B규약에 일치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치여부, 개정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국내에서 제정된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해 놓은 것이 726-9쪽에 있다. 적어도 1차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보다 우위에 있기에 국회가 조약하고 다른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국제인권규약 효력이 없어 지지는 않는다.

또 하나 헌법과의 관계는? B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규약을 보면 헌법에 있는 규정이 있다. 대개 일치한다. 헌법이란 것이 국제인권선언등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다. 국제인권규약에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존권이 있다’ ‘아무도 임의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등이 있다. 청소년에 대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인권규약 10조를 보면 청소년에 대해 성년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재판은 굉장히 신속히 처리할 것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헌법에 없는데 적어도 이런 조항은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은 우리나라 법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국회법보다 우위에 있다.

경우에 따라선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 헌법과 B규약과 불일치되는 것은 없다. 우리 상황이 많이 바뀌어 헌법이 개악되었을 땐 당연히 B규약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B규약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파악해 볼 때 일반법원에선 한 건도 없다. 일반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민변변호사들이 아주 드물게 B규약을 원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B규약 몇 조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유없다’고 판결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글 735-6쪽을 보면 동아일보 캐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90년 동아일보가 경영하는 <여성동아> 기사중 명예훼손기사가 실린 적 있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비용과 사과광고를 요구했다. 서울민사지법에선 손해배상금과 광고기재를 명했다. 이에 동아일보 사측은 “배상은 하겠으나 어떻게 사과광고를 하나 그건 우리사회 양심에 반한다”며 헌법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안용해 “사과광고를 명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우리가 90년 조인한 국제인권규약 18조 2항을 보면 아무도 강제로 자기생각을

표현하거나 신념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헌법의 규정으로 보나 강제사과는 양심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의 규정으로 보나 국제규약으로 보나 이것은 잘못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판례이고 아직까지 다른 경우는 없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법을 보면 전향을 안해서 가둬두고 간신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안전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안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유향덕(전교조 수석부위원장)씨 경우를 살펴보자.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조용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였는데 조변호사는 “유씨의 접견과정에서 안기부 직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받아적고 했다.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계속 강행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 행위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며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다. 당시 안기부는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다 인정한 것이다. 아마도 조변호사가 조사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을 안기부측이 부인 했다면 사실인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안기부측은 ‘간첩못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을 한 듯하다. 당시 이 재판은 변정수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당시 조용환 변호사는 헌법뿐만 아니라 인권규약을 주장했다. 인권규약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지적했다. 그러나 변정수 재판관은 그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두 가지 경우로 미뤄보면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규약이 우리나라 법이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듯 싶다. 동아일보 경우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적극적으로 인권규약을 이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성급하다.

되든 안되든 중요한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을 계속 주장해서 국내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보편화 시키는 노력과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반도에서 대양으로 나갈 단계에 있다.

사상전향문제(특히 감옥안에서 강제노역제외되고 있다·차별당하고 있다): 아직 이문제가 사건화되어 있지 않다. 교도소장에게 징역형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

재판지연-중요한 사건을 마냥 지연시키는데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박석진(전경) 91년 5월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아직 재판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는 복역중이다.

94년 재판촉구, 1년 지나 무소식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소송청구해야 한다.

질문

-신속한 재판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집시법, 보안관찰법으로 1심서 집행유예로 나왔다. 항소심 때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인되어 계속 집행유예로 있다. 외국여행시 여권신청때도 판·검사에게 출국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헌법재판소에 항의서한을 보내,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 일본

의 경우 10년을 넘긴 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형사사건으로 병합사건인데 이와 유사하다. 해고소송으로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나도 복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회사 측에 편지를 보내라고 권유를 하기도 한다. “나는 밥 잘먹고 신체건강하다. 정말 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회사의 경우 월급은 주지만 일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인권이사회 통보절차에 대한 의견이 나온 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의적 판단이었다라든지 어떤 견해가 나온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인권이사회의 심사과정은 어떠하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일단 형식적 요건으로 익명이 아닌 자가 신청서상 모든 국내절차를 거쳤는가, 호적등본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었는가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회는 의견을 정부에 보낸다. 정부는 시안에 따라 기각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형식적 요건에 맞게 할 수도 있다. 시안이나 쟁점에 따라 다르다.

출처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 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1. 들어가며-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⁶¹⁾)을 기초하는 논의가 한창일 당시 세네갈의 대통령이었던 Leopold Senghor가 했다는 말이다. 이말이 아니더라도 경제·사회적 권리가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을 현실세계는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전세계 인류의 1/5이상이 좌취와 빈곤하에서 살고있다. 그리고 매년 13~18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1분마다 24명이 죽는 꽂이고, 그중 18명은 5살 이하의 어린 이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지 부자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사급하게 해결해야 할 굶주림과 좌취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생활이 많이 풍요로워졌고 곧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된다고 한다. 이 출렁임 속에서 아직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을 굶는 어린아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버려지는 아이들, 오갈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 육아전쟁이라 불릴만큼 부족한 탁아시설, 폐교위기에 처한 농촌학교, 외국인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고통분담’과 ‘경쟁력강화’, ‘세계1위’의 신화에 떠밀리는 노동현장이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발전에 직결되는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가 오히려 발전을 이유로 하여 무시되고 위협시되는 속에서 외쳐지는 국제경쟁력이나 세계화의 구호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 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통한 발전의 성취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소망일 뿐인가?

불행하게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내의 파상적 인식⁶²⁾과 그로 인한 시행노력의 부

61) 보통 국제인권규약이라고 번역되어왔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은 규약·협약 등의 정부번역어가 국제인권조약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각 조약마다 제각기 다른 번역어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조약’으로 통칭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A규약, B규약이라는 약어는 조약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약어이므로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듯하다.

62)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프로그램규정설과 추상적 권리설이 대립하여 왔고, 추상적 권리설에 다수 학자가 지지를 해왔다. 최근에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하는 예가 등장하고는 있지만-대표적으로 허영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들의 이념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이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라고

죽은 우리의 인권수준이 1세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의 세대를 이야기할 때, 1세대의 인권은 '자유권'으로 2세대의 인권은 '사회권'으로 요약, 대표된다. 전자가 'oo를 당하지 않을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oo를 받을 권리,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당장 실행할 수 있으니까 권리이고, 경제·사회적 권리는 돈이 많이 들고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에 있어서 두개의 권리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연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이러한 인권규정 사이의 관계를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이라고 말한다.

한예로,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정치적 수인의 경우 그는 일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 당하면서 그 결과 감옥에서 노동할 권리도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도 문화적 권리도 제약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집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집과 거처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을리 없으며, 정치적활동을 할 수 없다.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자식이 있다면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 이렇듯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사회적 권리는 법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권리는 때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자원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재판회부가능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권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의 대표자격인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는 '간섭없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빙곤을 제거하기 위한 강제적 행위를 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을 펴는 것들은 자유에 대한 의도적 강제이기조차 하다.

과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단지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고, 조건이 될 때까지 보장받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래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경제·사회적 권리 역시 시민·정치적 권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한 영역이다.

첫째, '사법심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 예로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법관에게는

말하고, 권영성교수는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과 같은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법이론과 판결의 주요조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구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지 사람들의 '열망'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난감한 문제이겠지만 영양학자에게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아동기금 같은 곳에선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권의 문제 역시 그렇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많은 조약들은 노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근거들이며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이를 조약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둘째, 경제·사회적 권리가 돈과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생각해 보자. 고문이라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제도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시킬 수 없다. 이럴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노력이 함께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어린이가 원조를 받지 못해 죽었다면, 그 사회는 그 어린이에 대해 적극적인 원조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합리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고, 권리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강제'로부터의 자유만이 자유라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 가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⁶³⁾

그러므로, 인권의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만 한다. 어느 한쪽이 소홀할 때 그것은 다른 한편의 권리보장도 불완전하게 만들뿐이다. 인권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2. 국제인권보장의 틀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은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분리하여 선·후차성을 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에 놓는 것은 실재를 왜곡하는 것이다. 동·서양과 제 3세계가 1·2차 대전을 겪은 이후 토론해왔던 모든 것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일관된 수용을 증명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국가의 50% 이상이 양조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속에서 권리의 '전체성(totality)' 속에 수용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본적 권리의 내

63)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p28~37
Dilys M. Hi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acmillan, 1992

용들이며, 이는 최근의 국제적 논의 속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⁶⁴⁾

국제인권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은, 제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가운데 탄생하였고, 그 틀은 유엔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유엔은 헌장의 첫머리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대소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목적의 하나로 삼아왔다. 인권보장에 관한 유엔과 유엔산하 여러기관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설정에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에 관한 기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과제를 지고있는 유엔의 인권보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인권조약을 채택하고 당사국에게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사건을 통보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조약에 따라서 실시조치의 내용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첫번째의 이행의무부과는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사국이 꺼리기 쉽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⁶⁶⁾

그간 유엔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난민조약, 고문방지조약 등 20개의 조약을 중심으로 60개에 달하는 국제인권문서를 채택했다. 갖가지 UN 인권관련 회기 중에는 이와 같은 조약, 선언 등의 작성과 함께 여러 인권문제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즉, 각종 인종차별문제, 사형폐지문제, 발전의 권리 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인권의 관계, 소수자의 보호, 심신장애인의 인권 등 여러 방면에 걸친다.

이와 같은 검토분야의 확장은 국제조직의 설치와 매카니즘, 실시절차의 정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는 1967년에 인권침해 정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엔에 통보·건의하는 제도는 1971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유권·사회권 조약은 1976년에 발효되었다. 수많은 인권실태 조사단도 1970년대 후반부터 설치되었다.

이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64)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바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요구”이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시민·정치적 권리들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게 강조될 것의 재확인”이다.

Limburg Principles 3항: “인권과 근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똑같은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들다의 실행과 증진, 보장을 위해 있어야만 한다.”

65) 박홍규 편저, UN, 형성사, 1991, 34. 191쪽

66)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1994, 99~102쪽

국제조약”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그러나, 1976년 발효된 사회권 조약은 시작부터 경시되었고 다른 조약과는 달리 조약 자체로는 보고의 심의·권고 등을 할 실시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권조약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첫째 제 3세계국가들의 구조적 접근이 수용됨으로써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점, 둘째 제역할을 못해낸 회기내 실무 그룹의 ‘새로짜기’를 요구하여 이에 성공한 점, 셋째 사회권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자 한 Philip Alston교수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사회권조약은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 파업권,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 모성·아동의 권리, 생활수준·식량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과학과 문화에 관한 권리” 등 각종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으로 곧바로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고 줄곧 ‘노력의무’라고 부르고 있다.⁶⁷⁾ 따라서 사회권 조약은 ‘제소절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약 16조에 의거하여 가입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과 그 진전정도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당사국의 보고서와 관련유엔전문기관의 보고서는 유엔사무국에 제출되고 사무국은 그 보고들을 인권관련전문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낸다.

실질적으로 조약의 실행을 심사하는 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해서 1985년에 만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기내실무그룹(sessional Working Group)이 심사를 했으나, 그 활동의 비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조약의 충분한 실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위원회는 설립이후 1987년과 88년의 1, 2차 연례회기를 통해 124개국의 최초보고서와 44개국의 2차보고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첫째 사회권 조약의 규정들을 명확화하고 조약 각 조항의 해석지침과 당사국의 최소한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를 제시하는 일, 둘째 충분한 정보의 수집, 정부보고서의 심사와 그를 통한 권고를 그 주요활동으로 하고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관련유엔전문기관(ILO, WHO, UNESCO, FAO)과 NGOs의 협력을 받는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이며 본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에 의해 지명·선출된다. 이 전문가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해 선출되지만 정부의 대표는 아니며, 정부에서 독립되어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위원회는 조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⁶⁸⁾

67) 물론, 차별금지와 같은 조항은 가입국이 가입과 동시에 즉각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Limburg Principles 22항: “2조 2항의 ‘차별의 금지’와 같은 조약하의 어떤 의무는 충분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살펴보자 한다.

3. Limburg원칙에 비춰본 정부최초보고서의 비판적 검토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정부의 원칙적 의무는 국가적 수준에서 조약의 명문화된 조항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는 사회권조약의 시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초점이며, 당시국 정부의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회권조약 16조와 관련조항⁶⁹⁾을 종합하면 정부보고서는 진전사항만이 아니라 적합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또한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점을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 특히 정부보고서가 그 나라와 관련된 궁정적인 발전만을 개략적으로 그리려 할 때, 그러한 보고서는 조약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같은 원칙은 1986년의 립버그원칙(Limburg Principles)⁷⁰⁾과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후속조치로 Philip Alston교수가 제기한 원칙⁷¹⁾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

68) Philip Alston,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92, Clarendon Press, Oxford, pp. 473~508

69) 16조 "이 조약의 당시국은 조약에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17조 2항에서 더 정교화되어 "동 보고서는 이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70) 조약의 실행에 관한 립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1986년 6월 2~6일에 걸쳐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사회권 조약 기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한 결과이다.

이 논의의 참가자들은 현 국제법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립버그원칙의 내용은 크게 두부분으로 1) 기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국가의 보고서와 조약 4조하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 고려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약의 해석원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항, 국가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국제협력에 관한 것,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관한 것,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와 전문기구, 여타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속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사회권 조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기입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N.4/1987/17, Annex, *Human Rights Quarterly* 9(1987),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22~229

71) 1993년 세계인권대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인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채택한 문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내걸었던 목표에는 못미치는 것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사회권에 대한 침해를 제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가 보다 철저하게 향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성취하였던 진전사항(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에 관하여, 동규약 제 16조 및 제 1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임."

늦은감은 있지만, 이상과 같은 정부보고서의 서문에서 나타나듯 국제조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하며 국내의 법과 정책의 틀에 얹매이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인권조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약이 정한 보고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위원회와 다른 당시국 정부들이 조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반적 권고(General Comments)에서 조약에 의거하여 당시국이 보고하는 것이 단지 정부의 공적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²⁾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보고서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약은 진전사항만이 아니라 적합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또한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보고서는 '궁정적인 발전사항'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인권외교에 대한 무지와 보고의무에 대한 피상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외교의 예를 들자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성숙"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호언장담해 왔다. 인권선진국에서도 그런 호언장담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나름의 인권사각지대가 있고 인권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채택, NGOs의 '발언'이상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한 지원, 유엔내의 사회권에 관한 전문성의 강화, 사회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마련, 기입당사국이 보고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요소 마련 등이다.-Philip Alst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Human Rights: An Agenda for the Next Century*,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C. 1994, pp. 154~164
선택의정서의 채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Philip Alston, "No Right to Complain About Being Poor: The Need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Economic Rights Covenant", *The Fut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Norwegian University Press, Oslo, 1991, pp. 79~100 참조

72) UN Doc. E/1987/28, para. 301~304

적인 생활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와 가시적 성과만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정부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를 쳐놓고 구체적인 국내의 성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방식인가?

정부보고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자나 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전정도’에 대한 ‘보고’가 아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식의 ‘선언’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여 이제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제화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민주화개혁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등의 표현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주장이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주장에 비해 정부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들은 경제성장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성과와 그와 관련된 부문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국제수준과 비교하거나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 한국에서 권리보장이 가장 시급한 집단이 누구이며, 가장 문제되는 시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책적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립버그원칙에서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된 정도를 알리기 위하여 수량적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통계적 정보와 예산할당과 자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지표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한 목표와 지표는 적합한 것으로서 당사국이 그들의 보고서에서 제출한 통계의 적절성과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세워진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⁷³⁾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사회권조약의 각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수준과 일치하고 있는 듯한 서술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 이해 상황과는 유리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고 법원의 판례나 실제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해서 조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의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절차와 예산할당 등 실시계획이 아닌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법조문의 나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조약이 정한 인권보장과 관련된 한국의 법체계를 충분히 소개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노동권과 관련된 법률

73) Limburg Principles 79항

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노동조합 가입권에 대한 제한규정, 노동조합의 활동제한규정, 노동쟁의의 금지에 관한 조항 등에서 정부는 개정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법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약이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단순히 관련 입법규정만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제 권리의 실행하기 위해 체택한 사법적 구제책과 행정절차를 비롯한 수단과 그러한 구제책과 절차 하에서의 실천내용을 적절하게 구체화시켜야 한다.”⁷⁴⁾는 원칙에서 동떨어져 있으며, 결론적으로 조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 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만한 것은 보고서 작성과 제출과정의 철저한 비공개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홍보의 부족 때문에 사회권조약의 비준과 관련된 일체의 정부활동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조약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조차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더욱기, 민간단체들이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유엔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94년 6월 16일까지 정부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를 거절했다.⁷⁵⁾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포괄성과 방대함으로 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논의와 조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입장과 통계만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으며, 관련부처간의 협조나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립버그원칙의 규정⁷⁶⁾을 살펴볼 때, 보고서 작성과정의 폐쇄성과 민간단체 보고

74) Limburg Principles 78항, 이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17항: “국가적 수준에서 당사국 정부는 조약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리의 성격과 일치되도록 입법, 행정, 사법, 경제·사회·교육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18항: “입법화의 수단만으로는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이 조약하에서 추정된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입법화 조치가 자주 고려되는 것이 주목되어야만 한다.”, 19항: “당사국 정부는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하여 적절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만 한다.” 80항: “필요하다면, 정부는 조약상의 권리의 실행준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어려움과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간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연구를 주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81항 “정부보고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더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지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목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75) NGO's Initial Repor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South Korea, June, 1994, p3

76) Limburg Principles 9항: “민간단체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할은 국제적 수준에서나 국내적 수준에서나 용이해야만 한다.”

11항: “사회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를 불러일으키려는 국가 차원의 집중된 노력이 경

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비협조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정부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⁷⁷⁾

첫째,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회권 위원회의 사전 심의작업분과에서 사전에 제기한 질문 시장에는 '사회권조약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 5월에 열린 위원회의 12차 회기에서 한국정부보고서가 심사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Danan 위원은 "사회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과연 몇명이나 국제조약에 관하여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한 반면, 답변에 나선 허승 대사는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more and more aware of human rights). 인권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10명 모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이 조약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명이나 안다고 답변할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중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⁷⁸⁾ 정부가 홍보와 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취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역시 언급이 없다.

정부가 조약을 번역하여 대중적으로 출판한 자료는 없으며, 초·중·고 교과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인 중에서 본 조약의 이름을 들어본 국민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조차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한국내 언론은 국제인권보장에 대해 무지할 뿐더러 보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중적인 참여는 모든 단계, 즉 국가정책의 형성, 적용, 재검토 단계에서 필요하다.

74항: "감독기제의 효과성은 보고서의 질과 적시성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관부처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충분한 국내절차, 관련 자료의 수집, 실무진의 훈련, 배경서류의 입수,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와의 협의등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76항: "당시국 정부는 보고의무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공공성이 보고서에 부여되어 하며, 가능하다면 초고상태부터 그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준비는 관련 국가정책이 각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재검토하는 기회일 수 있다. 또한 그것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하는 기회일 수 있다."

77항: "정부는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를 관련시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77) 이 부분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서문'을 보완한 것이다.

78) 김선수, 제 12차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친'가보고서, 5쪽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각국은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공정보보급을 광범위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데, 우선은 국제인권조약집을 출판하여 널리 보급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인권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수집, 번역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권문제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정부대표들이 위원회 심사증에 보여준 태도는 심사제도의 취지와 기초도 모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⁷⁹⁾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권 조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과 방위비의 과다한 지출이라는 조건과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전략'을 들 수 있다.⁸⁰⁾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의 25-30%(1994년 24.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과 사회개발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할 자원의 수준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통해 불평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실패를 낳았고, 이는 인간사회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에 대한 정치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문민정부에 와서는 Globalization을 Segye-hwa라는 고유어로 표기하는 노력까지 보이면서, 세계화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이며 그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등식 속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세계화의 내용과 장기적 목표가 처음부터 제시되지 않고 정치적 국면전환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요구를 '경쟁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노동자와 생존권 요구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많았다. 남북분단을 이유로 하여 이들의 생존권 요구를 안보위협의 요소, 즉 공산주의적인 것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79) 이는 민간대표단의 보고서에서 "언어구사능력의 부족, 핵심적 문제를 비껴가는 답변, 답변의 보류, 시간끌기식 답변"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Limburg Principles 82항에는 "당사국 정부와 조약규정과의 일치를 평가하는 기관과의 의미있는 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충분히 알고있는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80) 이와 관련되어 Limburg Principles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해석, 62~68항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조항을 예를 들면, "막연하고 자의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없다. 남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효과적 구제책이 존재할 때에만 국가안보에 호소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화된 침해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한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그러한 침해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거나,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에 목적을 둔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 공공질서의 부분이다.", "공공질서의 유지를 책임진 국가조직 또는 기관은 그들의 권력을 의회, 법원, 다른 소관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행사하는 속에서만 통제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현재 문민정부 하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나 빈민·장애인 등의 사회적 권리 주장이 세계화 전략속의 ‘국가경쟁력’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노조지도자를 처벌하던 법원은 최근 들어 노조의 행위에 대해 기업주의 ‘손해배상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구촌 문제의 범람 속에서 인류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상호협조와 상호공존이 강조되어야 하는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익’이라는 부분을 정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제한을 남용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국가책임성의 결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를 들 수 있다.

림버그 원칙은 “국가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적 최저달성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⁸¹⁾”을 조약의 위반으로 보고 있고, 당시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긴급한 고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것, 빈민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⁸²⁾

그러나,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사회복지 기반은 한국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못할 뿐더러 ‘최저수준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GNP 세계 10위권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200만의 절대빈곤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권 국가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하위국가에도 못 미치는 9.67%이다.(UN-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1993) 이런 복지예산 수준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합리화되었을지 모르나 상대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현재에도 획기적인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책임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수의자 부담원칙’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실패에 개입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복지 본래의 의미와는 많이 빗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자를 수준이 극히 낮은데서 나타나듯 재정책임은 지지 않는 정부가 많은 복지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그에 따른 공적의무인 보고서 제출이 절차에 따른 정부의

81) Limburg Principles 72항

82) Limburg Principles 14항: “빈민과 다른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만 하고, 선주민과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39항: “평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과 개인을 위해 채택한 특별한 수단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정부보고서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Limburg Principles에서는 “일반적 원칙으로 조약은 자국민과 비자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하며, “비자국민에 대한 사회권조약 2조 3항의 제한조항은 식민기간동안의 비자국민에 대한 어떤 경제집단의 지배에 목적을 둔 규정으로서 ‘협소’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보고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인류보편의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와 비판을 수용하려는 노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4. 민간단체보고서의 준비

위와 같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에 비춰볼 때 민간단체 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크다.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수준에 비춰 검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는 인권운동 부문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아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93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의 한 단체를 통해 입수한 것은 94년 5월 20일 경이었다. 정부는 최초보고서의 제출사실을 전혀 공개한 바 없었고, 따라서 그해 6월 27일부터 열리게 될 사전설무분과 회의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사업은 긴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권영길(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및 업종회의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인이 민간보고서의 공동작성을 긴급 제안했고, 이에 찬성한 9개단체⁸³⁾가 모임을 갖고 바로 해당분야 집필에 들어갔다. 1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식보고서는 제네바로 출국한 실무대표자에 의해 유엔인권센타사무국에 직접 제출되어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무분과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28항목의 질문을 확정하여 공개했다.

위원회는 본래 94년 11월의 11차 회기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의 12차 회기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에 약식보고서를 준비했던 민간단체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계속했다. 95년 1월, 새해 초부터 시작된 준비모임은 위원회의 이해를 돋기 위해 새로 취합된 초고를 기초로 한 ‘요약본’을 3월 29일 유엔에 미리 발송하였고, 5월에 열린 본회의에는 정식보고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대표단의 발언시 참조할 슬라이드 필름을 준비하여 대표단 4인이 참석하였다.

민간단체보고서는 한글본이 110쪽, 영문본이 10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등 사회권의 상황에 대한 서술,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대정부 제안 및 질의안 등을 담고 있다.

83)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 참여민주시회 시민연대 인권센터,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동의서명단체: 노동과 건강 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5.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위원회는 1995년 5월 2, 3일에 열렸던 회의에서(E/C.12/1995/SR 3, 4 and 6)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⁸⁴⁾

먼저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에 있어서는 뚜렷하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그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에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의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분야에 있어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유감을 먼저 표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대표들이 모든 국내법이 조약상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적합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된 사항으로는 방위산업체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권의 제약이 사회권조약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가 배치된다고 본다. 이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해고소식과 조합원들의 평화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의 지위, 고용시 성차별·직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남녀간 임금격차 등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 외국인에 대한 차우와 작업조건,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공급부족, 부적합한 주거상황, 무주택자의 숫자와 강제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한국정부가 기용지원을 고려할 때, 주변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치만을 해왔을 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셋째, '제안과 권고'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에 대한 국내법의 즉각적 개정, 프로그램의 마련, 차별의 철폐, 추가정보의 제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마련,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에 걸쳐 강경한 표현의 권고와 점진적인 개선의 노력이 아닌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6. 마치며

사회권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의 상당부분은 민간단체의 제안내용과 일치되며, 노동조합결성권, 파업권, 경찰폭력, 여성평등, 주거권, 영세민중,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84) VUTERE E/C.12/1995/3 19 May 199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sion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는 여러 단체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보고서 제출의 성공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단순한 반박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단체들간에 사회권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진전을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5년마다 있을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심의의 과정은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비춰 우리의 문제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인권 관련단체들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民間보고서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넓은 분야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에 교육과 홍보의 의무가 있지만 현재상황에서 기본적 인권과 주요인권조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담당 기관의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과 국내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시,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상호연결적이며 상호의 존적이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박탈된 때에 인간은 세계인권선언이 자유로운 인간 이상으로 간주하는 인간일 수 없다-유엔 총회 결의 421호"

출처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 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아동권리조약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조약'은 1990년 9월 2일 비준국이 20개국을 넘어 발효하게 되었다. 이 획기적인 조약의 출발점은 1924년에 국제연맹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제네바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 '아동'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

고대·중세 이후 유럽에 있어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정 받지 못했다. 잘해야 '미완성인 어른'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몇몇 예외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동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길들이기'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완성인 어른'이라는 아동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기 사상운동의 선봉이었던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의 체벌이 판을 치는 비인도적인 학교교육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그 존엄에 걸맞게 처우할 것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르네상스 시대 아래 사람들은 적어도 사상적으로만는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말하는 '아동'은 어느 특정의 사회계급에 속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아동이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이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 자크 투소가 가장 명확하게 전개했다. 투소는 "아동의 발견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교육소설 <에밀> 머리말에서 아동의 독자성, 아동으로서의 완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고유의 가치나 인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주장이 나온 셈이다.

투소의 교육사상은 그 후 폐스탈로치나 플레베르 등 근대 교육사상가들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신교육운동'은 '아동중심의 교육' 등 주장을 통해 학습주체로서의 아동의 인간성 존중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제네바선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특히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두번 다시 이런 참상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평화적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결의로써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었다.

국제연맹은 1924년 9월 26일 제5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짐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라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5개조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제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어져야 한다.

제2조 아동은 가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지체이나 비행에 빠져 있는 아동은 그 회복과 생생을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가 주어져야 한다.

제3조 아동은 재난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제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

이 선언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아동의 권리선언'(1959)에 계승되고 결국 '아동의 권리조약'(1989년)에까지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 '제네바선언'에는 제2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즉 이 선언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네바선언'의 특징이다.

'제네바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아동의 권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국제적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의 큰 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년도 못되어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1300만명이나 되는

아동이 이 전쟁으로 죽어갔다.

인류를 불행의 밑바닥까지 몰고 갔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럽에는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두번 다시 독재나 압제의 불행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하나의 결과가 'UN헌장'(1945년 6월 26일 서명, 같은 해 10월 24일 발효)이다. 이 헌장에 의하여 국제연합(UN)이 창설된 것이다. 국제연합 가맹국들은 '평화'와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창설된 바로 이듬해인 1946년 UN은 그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4년의 '제네바선언'이 그랬듯이 전세계 사람들이 튼튼히 연대하기 위한 중심으로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아동의 권리선언' 작업에 앞서서 경제사회이사회는 해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인권위원회는 탄생과 동시에 '국제권리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권리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가지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 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선언에는 자유평등, 차별 금지, 생명·신체의 안전, 노예·고역의 금지, 고문·잔인한 처우와 형벌 금지, 사람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이전·거주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서 이들과 함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생활보호, 어머니와 아이 보호,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속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두개이다. 즉

첫째로 제25조 [생활보장]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하면서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동은 적들이든 아니든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제26조 [교육의 권리]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아울러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육목적을 밝히면서 3항에서는 "부모는 아동에게 줄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의 권리선언'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4. '아동의 권리선언'

(1) 성립과정

19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의 작성작업은 실로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아동의 권리선언'이 성립함으로써 1959년 11월 20일에 끝났다. 성립에 이르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의 연대기는 대략 아래와 같다.

- 1947년 10월 제2차 UN총회 사회위원회(제3위원회)에서 헌장 성문화를 위한 기획 시작.
- 1948년 '제네바선언'의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장 작성을 결정. 사회위원회가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준비를 요청.
- 1950년 사무총장, 사회위원회에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된 선언안을 제출. 이 전문에서 '제네바선언'의 원칙인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는 언명 외에 "아동은 법률상의 미성년인 까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위원회는 이 사무총장안을 심의, 경제사회이사회에 넓 선언안을 작성했다. 전문과 10개조항으로 된 이 안은 명칭을 '헌장'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정했으며 특히 전문에서는 "아동에게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고 하면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목적을 위하여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가 난다. 이 안은 1950년에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 195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위의 안을 심의한 결과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로 보내고 의견을 구하려 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이를 1957년까지 미루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시키기 위한 초안 작성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 외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따로 냄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 19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위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아동은 법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권리 행사를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선언'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나라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이 문서를 단순한 선언으로 할지 조약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은 권리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조약

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아르헨티나 등은 각국의 법적·사회적 현실로 보아 조약화는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 결국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모아 '선언'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영국 등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원칙만으로 된 간결한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소련·폴란드 등은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고 권리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를 정하고 아울러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가 제출한 두 가지 수정안, 즉 "각국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 및 편의를 법률로써 부여해야 한다."와 "가정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사회 및 공적기관에 특별한 보호의무를 과해야 한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다.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작성단계에서 성립까지 한결같이 조약화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권리선언'을 알찬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나중에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의 권리선언'(안)은 1959년 UN 제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

전문

-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
-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 재확인
-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보내고 또한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선언을 공포하고 부모, 개인인 남녀, 민간단체,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권리의 준수를 위하여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조: 아동은 특별의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지능적·도덕적·정신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와 편의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최고의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3조: 성과 이름 그리고 국적으로 가질 권리

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5조: 신체·정신·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의 치료·교육·보호를 받는다.

6조: 아동은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예정과 이해를 가능한 한 그 부모로부터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양호가 주어져야 한다.

7조: 교육을 받을 권리

8조: 아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최초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9조: 아동은 방임, 학취,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매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0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됨과 동시에 이해·관용 정신 아래 그리고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제네바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선언은 '제네바선언'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풍부케 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의미 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처럼 '아동의 권리선언'도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 규제력의 결여로 인하여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5. '아동의 권리조약' 제정에의 발걸음

(1)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이끈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 빌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국제권리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권리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 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두개의 조약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

약)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다. 그리고 B규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형폐지와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를 직접 UN에 제소하는 절차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이 세가지 조약은 모두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했다.

두가지 규약은 UN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의 이념과 정신을 확인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전문을 가지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또한 제1부에서 인민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제2부에서 규약에 담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체약국이 해야 하는 노력과 의무,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평등, 공공복지의 관점에서의 인권제한, 인권의 파괴 혹은 부당한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제3부의 실체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A규약은 노동권, 좋은 노동조건 확보권, 단결권,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B규약은 생존권, 고문 등 금지, 노예·강제노동 금지, 주거·이동·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AB규약에 가입했다.

(2) '국제 아동의 해'와 '아동의 권리선언'의 조약화 작업

UN은 '아동의 권리선언'(1959년) 20주년에 해당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정하여 아동인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정부는 제34차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이 안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풀롬비아, 요르단, 세네갈, 시리아·아랍공화국, 폐루 등 7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3월 8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는 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전문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선언'의 10개조항에다 9개조의 실시조치사항을 더한 총 19개조항으로 된 조약원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제출해 하여 가능하면 '국제 아동의 해'인 79년에 조약으로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1979년 3월까지 UN에 모아진 여러나라의 의견은 총 57건,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 조약원안에 찬성하여 1979년에 조약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부류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선언'과 '조약'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동의 권리선언'을 그대로 조약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국제 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가지 연구성과를 기다린 후에 조약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대세는 후자 쪽이었고 1979년 조약 채택에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1979년에 조약을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약화를 위한 작업그룹은 1979년에 만들어졌고 의장에 폴란드의 아담 로파트카교수가 선

출되었다. 그는 1989년 '아동의 권리조약' 채택 때까지 한결같이 조약 초안을 만드는 일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

1979년 10월 5일 폴란드는 전문과 28개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 수정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같은 해 1월 16일부터 4일동안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바르샤바회의' (서유럽 11개국, 동유럽 8개국, UN관련기관 3단체)의 성명과 결의를 반영시켜 폴란드정부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 수정초안은 이후 해마다 열린 작업그룹 심의에서 '아동의 권리조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필요한 가정에의 원조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국가 및 부모는 그 아동이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의견표명의 권리)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아동의 권리조약'에 반영 되어 있다.

10년동안의 기나긴 조약화작업을 거쳐 전세계의 인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결과물인 '아동의 권리조약'은 완성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이 날은 아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구가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이후 실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구제·보호 받아야 할 아동'에서 '권리의 향유주체로서의 아동', 그리고 다시 '권리의 행사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아동관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아동의 권리조약'의 성립

지금 아동의 지위는 과거 노예나 여성의 지위를 닮았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권리를 갖지 않고 또는 그들 대신에 자비롭게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주실 '주인' 비호하에 있기 때문에 권리파악은 필요 없다고 인식되어 있다.

1989년에 UN총회는, 1924년의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 이래 65년만에, 그리고 1959년의 UN '아동의 권리선언' 이래 30년만에, '아동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 명이나 죽어간다고 하며 '절대적 빈곤'에 있는 아동은 1억5000만 명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 범죄 등등이 넘쳐 아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이 조약은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전진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과 아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인권운동사랑방에 의한 조문내용 요약)

전 문

I 부

- 1조-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2조-당사국은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권리 보장.
- 3조-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4조-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조-당사국은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용하는 방법으로 부모의 감독·지도책임과 권리·의무 존중한다.
- 6조-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에의 권리 인정, 생존 발전의 확보
- 7조-이름·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 8조-국적, 성명, 가족관계 등 법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 받을 권리.
- 9조-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및 분리될 때 필요한 절차.
- 10조-당사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을 공정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11조-당사국은 아동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이송하는 행위와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퇴치해야 한다.
- 12조-견해를 형성할 능력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
- 13조-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전달할 자유.
-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15조-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16조-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
- 17조-당사국은 아동의 대중매체에의 접근, 다양한 국내·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접근을 확보한다.
- 18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공동 양육책임. 그 책임 수행을 위한 당사국의 원조의무.

19조-당사국에는 부모의 아동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0조-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 그 가정환경이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 보호

21조-입양을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상세한 절차규정.

22조-난민 아동 보호 및 원조. 그러기 위한 국제적 협력.

23조-장애 아동, 그 존엄, 자립 촉진, 사회참가를 용이케 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

24조-“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국제협력 촉진.

25조-의료시설 등에 조치된 아동이 받는 치료 기타 모든 조치에 당사국이 정기적 심사.

26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7조-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8조-교육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 징계는 아동의 존엄과 일치해야 한다.

29조-교육목적. 능력의 최대발전, 인권, 자국 및 타국 문명 존중, 평화·관용·성적 평등·자연환경 존중.

30조-민족, 종교, 언어, 종족상의 소수자 아동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 등을 존중받을 권리.

31조-휴식하고 여가를 갖는 권리. 나이에 걸맞은 놀이와 오락을 할 권리.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가할 권리.

32조-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33조-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그 생산과 거래에 아동을 이용 못하게 모든 조치.

34조-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

35조-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국내·국제적인 조치.

36조-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금지.

37조-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간만.

38조-무력분쟁 중 당사국은 국제인도법 존중.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및 임대를 최대한 금지.

39조-모든 형태의 방임, 착취, 고문, 가혹행위, 형벌, 무력분쟁에 희생된 아동의 신심회복·사회복귀 촉진.

40조-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기타 상세한

규정.

41조-이 조약 이상으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기준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

II 부

42조-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어른과 아동에게 홍보해야 한다.

43조-'아동의 권리위원회' 설치 및 그 임무규정.

44조-당사국은 조약과 관련해 취한 조치와 이룩한 진보를 '위원회'에 보고 보고는 국내 공중이 널리 이용.

45조-'위원회'의 작업방식. UNICEF, UN전문기관, 기타 자격 있는 단체와의 협력.

III 부

(46조 ~ 54조는 생략)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해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기존의 국제인권법도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동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 속에 매몰되어 뚜렷이 인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현실과 구조를 반영하면서 아동에게 특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쓸모있는 기준들을 담은 법적 문서이다.

1) 일반규정 (1조~5조)

① 특히 유의할 점은 '아동', '부모', '국가'의 3자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즉 우선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조자로서 첫째로 부모의 지도권(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런 후에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에 원조 및 보호의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5, 18조)

② 조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전문 마지막 항, 4, 11, 21, 23, 24, 28, 34, 35조)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것이 각국 내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2) 실체적 권리의 내용 (6~41조)

① 생명권 · 생존권 · 발전권(6조)

'조약'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6조) 이 생명권이란 타자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8(아동의 행방불명 방지와 관련), 24, 26, 27, 37조 등).

생명권은 절대 불가결한 기초적 권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중매체에의 접근권,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놀이에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17, 28, 29, 31조).

②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권리 (7, 8, 9, 10조)

아동을 양육할 일차적 책임자는 당연히 부모이다.(18)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7-①) 따라서 조약은 우선 '신분(아이덴티티)을 보존할 권리'(8),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9), 가족 재회(10)와 관련된 규정을 둔다. 그러나 그 와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19, 9-②, 20, 21조)

③ 의견표명권 · 시민적 권리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일 것이다. 이것은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청문을 보장함(12조)은 물론 학교 교칙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관한 반대권 등등 아동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장차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는 데 이것은 추상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서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으로 획기적인 아동관의 진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년시법(司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40조). 어른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보장을 시민적 권리로서 확인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에 맞는 조치를 규정한다.

④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아동의 보호 · 원조, 장애아동의 권리, 소수자 · 선주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차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미약 ·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성적 차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유괴 · 폐기 · 거래 방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보호 등 규정(22, 23, 30, 32, 33, 34, 35, 38조)은 오늘의 세계적 인권상황의 직접적 반영으로서 특별한(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들이 단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극적 현실적인 해법까지 규정되어 있다. '조약'의 실천적 성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3) 국제적 실시조치

당사국에 과해진 조약상 의무가 당사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10인의 개인자격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UN에 설치된다(43조).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들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이룩된 진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UN에 당사국 대표를 참석시켜 질의를 한다. 특히 이 ‘조약’의 보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① ‘위원회’는 UNICEF 등 전문기구와 협력한다. 이들 전문기구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조약규정의 실시 여부를 ‘위원회’가 검토할 때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기도 하고(45조a) 당사국의 보고 및 ‘위원회’의 당사국들에 대한 소견·제안을 송부 받아 검토하면서 당사국에 기술적 원조와 조언을 주기도 한다(45조b).

② NGO(특히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NGO)들은 “기타 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위원회’의 작업에 일정 정도 참가할 수 있다(45조a,b). 이것은 단순한 읍저버로서가 아니라 조언이나 원조를 요구 받는 자위가 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의 역할은 조약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역할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조직하는 데도 있으며(45조 첫부분) UNICEF나 NGO들의 역량은 조약을 기초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의 국제적 실시과정에 있어서도 불가결의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당사국은 또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44-⑥).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때 국내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단체들과 널리 협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사전에 협의가 잘 되면 국내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UN에서까지 계속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아직 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과 정부의 의무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즉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맞추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아동의 권리조약’을 은폐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제42조의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분명한 ‘인권교육’이다. 또한 이 조약 28조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29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의 ‘교육목적’ 중에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UN헌장에 정해진 여러 원칙의 존중

을 발전케 한다.”는 것이 있는 데 이것 역시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은 조약상 가입국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눈 챙고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런 ‘인권교육’을 찾아낼 수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1993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만이 세련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았다.(‘인권하루소식’ 1994.1.13.)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

이 문서는 1989년에 UN에서 채택되어 대한민국이 1991년에 비준·가입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대한민국 정부번역판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수정을 가한 부분은

-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바꾸었고
- ②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조항에 원래는 없는 짧은 제목을 넣었다.
- ③ 각 조문마다 원문에는 없는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다.

전 문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的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최소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下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전문은 법령의 각 본조 앞에 배치되는 문장으로서 그 법령의 목적 · 원칙 · 취지 등을 선언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지침이나 방향성을 가리킬 뿐 아니라 본문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의 전문은 모두 13개 단락으로 이루어지나 내용상으로는 몇 개의 덩어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덩어리는 제1·2단락으로 이루어지며 이 조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UN헌장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덩어리는 제3·4·8·9·10단락으로 이루어지며 이 조약이 인권에 관한 기준의 여러 국제문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이 조약이 세계인권선언(1948) 및 국제인권규약(1966)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었음을

말하고, 또한 제네바선언(1924-국제연맹 때), 아동의 권리선언(1959),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1986) 등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덩어리는 제5·6·7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이 가족 및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말한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가족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자연적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아동이 사회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이상으로 하면서 사랑으로써 행복하게 키워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개인·가정·지역·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그것이 이 조약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 3개단락(11, 12, 13단락)은 전세계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있으며 그들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아동의 성장에는 각국의 전통과 문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18세기 후반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인권선언이 탄생된 후, 19~20세기를 통하여 인권사상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으나 그 사이 인류는 여러 차례 비참한 경험을 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무력한 아동은 항상 이 비참함을 직접 겪어야 했으며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 현대에 있어서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은 어쩔 수 없이 탄생했다. 이 조약은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을 포함해서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서대결이라는 정치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인권을 다시 밀뿌리부터 생각해 보는 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제1조 (아동의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해설] ‘18세미만’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의이다. 그러나 ‘18세미만’이 출생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생 이전(태아) 단계에서 시작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률마다 ‘아동’ ‘소년’ ‘미성년자’ 등 여러가지 표현을 쓰

고 있으며 그 연령 정의도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다.(소년법- 만 20세미만, 아동복지법- 18세미만, 청소년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 근로기준법- 13세 이상 18세미만, 민법-“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조약을 근거로 정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2조 (차별 금지)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무능력·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 자신의 여러 조건 뿐 아니라 그 부모 혹은 보호자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다. 하위 법령이나 현실의 장에서 차별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장애자인, ‘빨갱이’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결손가정’의 아동이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이 있다. 여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결손가정’ 학생이 은행에 취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라는 표현은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에도 있다. 이 조약에서는 제9·18·20조 등에서도 되풀이 등장하는 말이며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장래 축적되어갈 실천 속에서 거듭 검토되면서 심화되고 또 분명해져 갈 것이다.

제4조 (권리의 실현)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사용자원의 최대한도 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태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점진적 실시의무(A규약-사회권규약)과 즉시적 실시의무(B규약-자유권규약)의 구별이 이 조약에서도 관철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에서는 사회권과 자유권을 확연히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예를 들어 부모에 의한 학대로부터의 보호(19), 난민 아동의 보호(22), 경제적·사회적 차취나 성적 차취로부터의 보호(32~36), 무력분쟁하에서의 보호(38) 같은 여러 권리 는 A에 속하는지 혹은 B에 속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5조 (부모 등의 지시·지도 존중)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확대가족’(the extended family)은 ‘대가족’이라는 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은 부모 및 기타 어른의 지도 · 감독은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동은 어른의 사유물이 아니다.

제6조 (생명에 대한 권리 및 생존과 발전의 확보)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7조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해설]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즉 인생의 출발점에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제적으로 이미 아동에게 고유의 권리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제8조 (신분 보존의 권리)

-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제7조의 연속.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금지)

-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않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라는 표현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심사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동의 의사에 관계없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첫째로 부모가 아동을 학대·방치하거나 부모가 별거 중이어서 아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아동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특히 나라에 의한 부모와 아동의 분리에 관해서는 나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한다.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해설] 국경을 넘어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나라가 다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9조의 특수형태를 따로 조문으로 명문화시킨 것이다. 출입국 실무가 주로 ‘국의’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나라들(특히 일본과 같은 ‘제3국인’에 대하여 폐쇄적인 나라들)은 출입국관리법을 대폭 수정해야 할 차지에 있다.

제11조 (국외 불법이송과 미귀항에 대한 조치)

-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해설] ‘미귀환’이라는 표현은 국외에서 국내로 귀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퇴치’(combat)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분투한다는 뜻. 자구적인 규모로 사람들이 아동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아동 역시 국경을 넘어 아동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제12조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해설] 이 조약에서 가장 참신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교에서 아동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는 “대리인 또는 적절한 단체”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해설] “기타의 매체”(any other media)는 “기타의 수단”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단지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명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매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등 예의한 표현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일은 타당치 않다. 아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에 대하여는 관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서구입을 희망하거나 신문 등을 빌릴 때 항상 학교당국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금지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들은 이 조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도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해설] 종전 어른에게 고유의 권리라고 이해되어왔던 이 전통적 권리항목이 명문으로 아동의 권리로 인정된 것. 2항은 아동을 카우는 부모의 교육방침도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역시 여기서도 부모는 무제한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 제약을 안게 된다.

제15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도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해설]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등 표현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쨌든 아동의 결사나 집회에 대한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필요 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内外에서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일이 규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은 이 조약에 위배 된다고 하겠다.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to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such interference or from such condemnation.

[해설] 우리나라 아동은 일상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동의 ‘명예’ ‘신망’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매우 생소하다.

제17조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할 권리)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해설] ‘유익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항상 미묘하고 곤란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 조항은 나라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케 하

는 것이 아니라 '장려'에 머물게 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유해' '유익'에 관한 판단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체약국의 지원조치)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해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라가 그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3항은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녀평등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제19조 (학대·방치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사·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20조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 보호)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필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해설] 3항에 말하는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

는 자국인이 아닌 아동을 양자로 삼은 경우 그 아동을 양부모의 나라 시민으로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21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바탕에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 당국에 위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디자이팅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의 입양에 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틀이다. 우리의 입양제도가 이 기준에 맞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및 원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해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를 갖기 때문에 국외로 도피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반울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을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해설] -생략-

제24조 (건강과 보건서비스에의 권리)

-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자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해설] -생략-

제25조 (수용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해설] -생략-

제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해설] -생략-

제27조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시국은 국제조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조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28조 (교육에의 권리)

1. 당시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틸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시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시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해설] 이 조약의 '교육에의 권리'는 교육을 받는 권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질까지도 요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right to education)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인 여러가지 서류를 본인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학교측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표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1. 당시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조 또는 제 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설] -생략-

제30조 (소수민족 또는 선주민 아동의 권리)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생략-

제31조 (휴식·여가·놀이 및 문화생활의 권리)

1. 당시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시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32조 (경제적 차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1. 당시국은 경제적 차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시국은 이 조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시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해설] 아동노동에 관하여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24시간 편의점 등)의 노동

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3조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마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약취유인·매매·거래 방지)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고문·사형 및 자유 박탈 금지)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

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심리적·신체적 회복 및 사회복구)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회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소년사법)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구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차우 반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중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반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책방안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왕의 권리 확보)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조약의 홍보의무)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아동의 권리위원회 설치 등)

1. 이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의 발효 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조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 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가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체약국의 보고의무)

1.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조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조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 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위원회의 활동)

이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조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조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서명)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비준)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가입)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발효)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수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불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조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유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기탁)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이어론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조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출처 : 인권활동기를 위한 제 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고문방지조약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고문에 관해서는 전문가 입장이라기 보다는 일을 해 나가면서 남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들춰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고문에 대해 직접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문국진씨 때문이다. 유가협에 있으면서 고문 때문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의문사한 이철규씨나 이내창씨의 경우 고문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막연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93년 여름, 나는 문국진씨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가져왔던 영문 자료도 뒤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은 고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되어 왔으며 그 동안 이에 대하여 갖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지금에 와선 쓸만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고문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고문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범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사례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도 없었다. 결국 가장 초보적인 수준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88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고문에 의한 정신적 후유증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잘못된 몇가지 임상사례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고문문제 또한 더지고 난 뒤 가족들이 아우성치면 그때서야 대책회의가 생겨서 활동하는데 그쳤고 성과도 남겨두지 못했다. 80년대 특히 85, 86년도 조직사건 때는 안기부, 보안사, 차안본부에 의한 고문사건이 많았다. 당시 인권문제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고 <신동아> <월간조선>에서도 '고문'에 관한 기획특집을 다룬 정도였다.

그러던 중 87년 초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한변협과 재야운동단체에서는 고문추방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그 속에 고문근절을 위한 센터, 고문피해자재활센터 등을 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외국 프로젝트를 따와 덴마크 고문피해자재활센터(RTC)를 사찰하고 와 세미나를 한번 열었을 뿐 축적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인권운동이 지속적이면서 예방적이지 못하다는 현 수준을 극명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제대로 된 고문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고문을 크게 보면 방법상 육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으로 나뉘지만 고문이란 것은 항상 육체

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같이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잠안재우기 고문이다. 3일 이상 잠을 안 재우면 보통 인간의 80% 이상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정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고문의 목적은 자백을 얻어내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문대상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잘못해 죽이는 것은 고문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다. 박종철과 이철규의 죽음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내창의 죽음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데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어쨌든 고문의 주체는 국가이다.

고문을 할 때는 고문범죄자(피해자), 대상(피해자), 도구, 고문협조자, 지시자, 방관자들이 서로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고문에 쓰여지는 도구는 모두 고문도구라 할 수 있다. 고문협조자란 의사를 말한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할 때 우선 고문대상이 얼마나 고문을 견딜 것인가를 체크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들이 협조함으로써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고문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사람마다 한계치를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고문의 증거능력을 없애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의사도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문방지조약이 만들어질 때 유엔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게 '의사들의 윤리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그 속에 고문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것을 요청하였다.

방관자란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이다. 권인숙양 사건 때 문구동이 직접 고문을 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문구동만 고문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6공안 경찰서장도 책임이 있다. 묵인, 방조한 사람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고문했다가 마수에 그친 경우도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문의 정의

고문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개인(국민)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존과가 사람을 잡아 놓고 고문을 한다' 한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란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 또는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을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의 목적은 조직사건 등을 키울 때 수사상의 목적으로 자백을 얻기 위한 것이다. 고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협소하게 정치범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수들에게 더 많은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목적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행위도 고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폭력을 단순히 경찰폭력이라고 하지 고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로드니킹사건 같은 경우 수사상 목적이란 명분하에 폭력을 행사했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폭력을 고문이 아닌 인종적 차별로 보았다.

고문방지조약은 이런 것을 고문에 넣고 있다. 무척 광범위하고 국제조약과 비교해 봤을 때

고문방지조약은 명확히 자기 규정을 내려 놓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는 고문을 더 폭넓게 쓰고 있다. 가령 사람을 2시간 이상 세워놓는 것도 소극적 의미에서 고문이라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고문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행위로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고문이 아니다라고 본다. 감옥환경도 문제다. 한 평의 협소한 공간에 1~2명을 계속 가둬 놓거나 대화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도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고문에 해당된다고 본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장가수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문의 특징

RTC에서 나온 자료 '고문피해자의 정신병리학'을 보면 고문의 실상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고문의 특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자료인 듯하다.

여기서는 고문의 특징을 6가지로 들고 있다. ① 절대적 불균형성 ② 익명성 ③ 이중의 압박 ④ 기만성 ⑤ 공간의 변질 ⑥ 시간의 변질이다.

① 절대적 불균형성 : 절대적 불균형성이란 사람의 관계가 대칭적 관계,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문으로 인해 한 사람은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로서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적 불균형성은 불균형적인 인간관계를 낳게 하고, 파괴된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게 된다.

② 익명성 : 고문가해자는 고문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심지어는 예인과의 은밀한 대화까지도 모두 파악해 고문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문가해자를 모른다. 수사기록에도 고문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형성된 불균형적인 관계들로 인해 대인 공포증, 기파증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익명성이다. 85년에 고문당했던 김근태씨의 경우 고문가해자가 이근안이란 사실을 밝히는데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로 보아 이 익명성이란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중의 압박 : 고문할 때 주로 '공범자가 누구냐'를 묻는다. 피해자와 같은 조직에 있는 동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다. 이 때 피해자는 고민을 하게 된다. 요구하는 대로 모두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극한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이중의 정신적 압박에 고통받는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부천지역 노동자로 10여년 동안 활동했던 최동씨의 경우 89년 고문당할 당시 겪었던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자살하고 말았다.

④ 기만성 : 고문하는 공간에서 고문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하는 대부분은 허위와 기만에 가

득차 있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들은 마치 피해자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기만하고 허위로 조작한다. 또한 비명소리를 조작하여 들려줌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과롭한다. 결국 이런 기만성으로 인해 고문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고문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⑤ 공간의 변질 : 아주 좁고 은밀한 공간, 밀실에서 고문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공간, 아늑한 장소란 개념은 사라지고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변질된다. 보통 육조와 침대를 생각할 때 육조는 물을 따뜻하게 받아놓고 목욕을 하는 친근한 공간이고, 침대는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아늑하고 은밀한 곳이지만 이런 장소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공간 자체의 개념이 변질되는 것이다.

⑥ 시간의 변질 : 시간의 변질도 공간의 변질과 비슷하다. 고문을 반복하면 대체로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문가해자의 경우는 1분1초가 치밀하다. 그러나 밀실에서 고문당하는 피해자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해가 떴는지 졌는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되면 인간 관계나 세계관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일반 정신증상과 다른 외상스트레스장애로 후유증을 나타내게 된다.

고문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에 학살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며 인권유린행위에서도 가장 잔인한 수법이라고 본다. 또한 고문당한 뒤 남는 후유증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고문의 역사

고문은 국가권력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규제도 없이 고문이 자행되다가 18.19세기 헌법이나 형법에 의해 조금씩 금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경우 전통적인 고문 방식은 '네 죄를 알렸다'는 식의 신문과 주리를 기, 명석말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일본이 법을 제정한 시기인 1907년에 고문금지규정에 들어갔고 그 뒤로 일제에 의해 고문이 상당히 많이 자행되었다. 외국에선 1차대전 이후 상당부분 명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시 2차대전 당시 나치들의 유태인학살이 자행되면서 고문금지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 뒤 국제법의 등장으로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나서 세계인권선언 5조동에 고문금지조항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인권조약들과 더불어 고문에 관한 조약들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1972년 국제앰네스티(AI)는 전세계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고문방 캠페인을 벌인다. 그때 AI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캠페인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페인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75년 UN에서는 고문방지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1976년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윤리법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76년 UN내에서 초안팀이 꾸려지고 79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 의학윤리원칙을 만들게 된다. 정식명칭은 '고문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과 기능에 관한 윤리원칙'이다. 82년 37차 UN총회에서 의학윤리원칙이 통과하고 이를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드디어 87년 고문방지조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고문방지조약에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비준한다. 그리고 87년 2월6일로 발효된다. 우리 국가는 87년으로 가입, 현재 8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UN인권센터에 원호회생자기금이 있어 프로젝트와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명목상 어느 나라든지 고문방지규정을 헌법에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고문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이 진행, 자행되는 현실 하에서 고문방지조약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완전히 민주화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고문은 계속될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에도 나와 있듯이 직접적인 고문 외에도 앞으로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인권침해까지도 고문에 준하는 인권유린으로 다뤄나가야 한다.

고문방지조약

고문방지조약은 75년에 채택되었으며 1.2.3부로 나뉘져 있다. 협약보다는 조약으로 쓰는 것이다.

제1부는 고문의 정의, 당사국의 의무규정등에 대해 자세하고 있다.

1조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이 행하였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처벌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교시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써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합법적 제재조치로 아기되는 것엔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 수감된 경우에는 고문이라 → ? 볼 수 없다.

2조 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②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험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③ 상급 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의 명령이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이는 고문근절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 볼 수 있다. 전쟁이나 비상사태, 어떤 한 상황에서도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상급관리, 교직의 명령에 의해 고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보면 일제시대 경찰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친일을 안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3조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고문피해자,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나라에 사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그가 본국으로 갈 경우 고문을 당한다면 아무리 추방당할 조건에 처해 있다 고 하더라도 추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4조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 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고문미수범이거나 공모에 가담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 등등하게 처벌된다.

5조 ①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관할권의 문제는 고문방지조약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이다. ②각 당사국은 범죄 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 있거나 1조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범죄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고문피해자들에게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피해자를 제소해 보라고 제안한다. 몇 년 전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재산을 압류하게 된 것은 그 피해자가 마르코스를 미국법정에 고소한 때문이다. 미국 법정은 마르코스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보상을 해 주었다. 5조에서 9조까지는 주로 그런 내용이다.

10조를 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10조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신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범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고문금지에 대한 교육, 홍보를 꼭 시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되고 있지 않다.

11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신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고문방지 실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2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13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한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우리 나라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다.

14조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사상 구제절차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고문이 있던 때로부터 전체기간의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더 짧아 7년이다. 그 안에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고문방지조약을 보면 공소시효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특성이다.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고문방지조약도 그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고문행위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를 받는다는 것이 신원권이다. 93년 박종철 사건 때 신원권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14조는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이라 했는데 단지 치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복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문피해자들의 민사배상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굉장히 요원한 얘기다.

15조는 고문에 의해 임의의 상태가 아닌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원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정치범의 문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듣는다. 이 조항에 근거했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강기훈씨가 아닐까 싶다. 또한 부산 강주영양의 사건에서 박태범부장판사의 경우 여기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16조 ① …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②본 규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16조는 예방책이다. 명백하게 고문이 아니어도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비인도적 형벌, 처우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다.

제2부 17-24조는 고문방지위원회에 관계된 것이다.

17조 … 고문방지위원회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위원구성도 애매한 얘기다. 작년 국제인권봉사회(IS)에서 인권교육을 하러 왔던 사람 얘기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18조 ①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b) 위원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이는 운영규정에 관한 조항이다.

19조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 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20조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0조는 28조에 의해 유보 가능한 조항이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접수하면 비밀조사를 한다. 21,22조는 선택조항으로 우리 나라 가입하지 않았다. 21조는 국가간 문제 제기권이란 A나라에서 B나라에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이를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인 A나라에 이를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만족스럽게 시정이 안되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즉 고문문제에 있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우리 나라는 이 조항을 유보시켰는데 이때 제시한 이유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22조는 개인청원권으로 내가 고문을 당했다고 할 때 국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뒤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당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인이 거쳐야 할 국내의 모든 절차란 우리의 경우 대법원까지를 말한다.

이후에 고문사실을 통보하면 고문방지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사건의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국에 제출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보고관이 조사토록 한다. 단 단서 조항이 있는데 개인청원권을 인정한 가입국의 개인이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가입을 안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청원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제기될 때만 접수가 가능하다. 구제조치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된다거나 당사국이 피해자에게 효과적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단 의명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문방지위원회에 믿을 만한 사실 근거를 갖고 그 나라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것이다. 정보는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대신 접수하게 한다. 고문방지위원회가 그걸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회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아직 시도는 못해 보았다.

24조까지는 고문방지위원회와 관계된 내용이고, 25-33조까지는 일반조항이다. 비준, 발효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제3부 31조에 당사국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문방지위원회가 다른 UN인권관련기구보다 권한이 있는데,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면 1년 후부터 당사국이 아니게 된다.

우리 나라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 발효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내에서 적용,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고문방지조약의 구체적 조항의 예를 수집하고, 다른 나라나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조항을 어떻게 준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 고문피해자 처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하는 사례를 수집,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 나라에 실행해야 한다. 또 고문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문들이

어느 범주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문방지특별법 제정, 감시센터, 고문피해자재활센터 등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고문은 아니더라도 굴욕적 비인도적 처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과거 고문은 육체적, 직접적인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요즘은 점차 고도화되어 정신적 고문이나 심리적 고문 등의 특징을 띠고 이루어지는 추세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어느새 철야수사, 철야조사가 관례화 되어 버렸다. 잠안제우기 고문도 대표적인 경우다. 신문이나 TV에서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청에서 철야조사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도하고 국민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군'하는 식의 생각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고문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들이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들은 대개의 경우 예감으로 수사를 한다. 먼저 범인일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증거, 자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방식이다. 이는 필히 고문방지조약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찰, 수사요원들의 교육이라 하겠다. 교육은 상사가 아닌 인권단체등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문에 관한 한 우리나라 일제 때부터 미군정을 겪으며 뛰어난 기술을 습득했다. 이런 잔재들을 없애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열해 보면

1. 변호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은 변호인이 접견하는 것도 허락이 안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변해야 한다.

2. 재판부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아무리 고문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낸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고 자백을 강요하기보다는 과학적 물증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 박태범 부장판사의 경우처럼 고문에 의해 얻어낸 증거를 부정하는 판례가 쌓여야 한다.

3. 피해자가 고소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하면 즉각 조사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고소를 하면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는 묵살되고, 민사사건의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린다. 1심은 1년6개월~2년, 대법원까지는 5~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고문은 온폐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고문가해자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은 고소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잡아들여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니, 고문을 해도 고문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고문 역시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방지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사나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변호인접견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고문의 경우 증거화보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부산 강주영양 사건의 경우 증인도 많고 비디오 테잎이나 사진 같은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고문을 당한 경우 증거제출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의문사처럼 풀리지 않는 부분 또한 그렇다. 남미의 경우 고문에 의해 죽으면 그것을 법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고문방지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고문후유증

마지막으로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미족과 아프리카족 사람들 319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고문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일단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만 짚차를 보면 피한다거나, 경찰서 앞을 돌아갈려 한다거나 경찰체복을 입은 사람을 피하거나 죽이고 싶다든지 하는 증세를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신체적(육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 고문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체적 후유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문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요법을 소개한 RCT자료('PSYCHOTHERAPY WITH TORTURE SURVIVORS', 1992) 80쪽을 보면 고문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구타, 발로 차기, 도구사용, 모의처형, 고문장면 보여주기, 심지어 남미족에서는 당사자 앞에서 그의 부모나 애인을 고문한다고 한다.

3백19명이 이러한 유형의 고문을 당했고, 정신병증후군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신체적 증세는 구토, 청력약화, 위장장애, 관절통, 피부외상, 골절, 탈골 등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의 상처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후유증도 못 밝혀낸다.

80년대 서노련 사건으로 민자당 김문수씨등 지도부 10여명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는데 고문이 끝난 후 목욕을 시켜주고 안티프라민으로 마사지를 해 피멍 자국을 없애주었다고 증언했다. 틸레포로라는 고문은 단단한 물체 '자'동으로 귀를 누르는 것, 피카다는 젖꼭지, 성기, 눈, 입 등 민감한 부분에 바늘을 사용해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며, 파날가는 발바닥에 고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도 손톱 밑을 찌르거나 펜치로 잡아 빼는 고문도 있는데 무척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런 고문을 당하면 여러 증세들이 심각하게 나오는데 특히 여자들인 경우 불임, 유산, 생리불순 등을 보인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지각적 증후, 심리적 증후, 신경성 증후로 나뉜다. 지각적 증후는 방향감각상실, 기억력 장애, 독해력 저하 등이고, 심리적 증후는 의기소침, 흥분성, 공격성, 감정의

불안, 고립감, 사회성 위축 등이다. 또한 신경성 증후는 정력의 저하, 불면증, 성기능 장애, 악몽 등이 있다. 백기환씨의 경우 70년대 당한 고통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후유증은 한 번 생기면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문국진씨의 경우 재입원 상태이고, 연대 84학번 김복영씨의 경우 올해 2월 자살했다. 최동씨의 경우도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이처럼 정신후유증의 경우 장기적이고 재발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문후유증 자체의 사례보고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치료 또한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정신적 후유증은 직업병이나 다른 병적인 증세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복통, 두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심하면 정신분열증, 편집증, 기억상실증세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국진씨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 왔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약을 먹는 수준일 뿐이다. 이 또한 약물중독 등의 의학적 문제와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군데 치료센터가 있고, 파키스탄, 필리핀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다. 덴마크의 경우 고문피해자재활센터는 80년 초에 만들어 졌다. 여기서는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 아담한 형태의 공간을 갖추고 피해자들의 종합적 치료를 위해 상담도 하고 정신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치료방법을 도입한 것은 RTC이다.

정치범보다 일반범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더 광범위하고 집요하다. 검찰에 의해 향정신성의 약 투약, 소지판매, 제조 혐의로 구속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부인되어 현재 15년형을 살고 있다. 검찰에 의해 고문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경우도 변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일반인들도 정치범 못지 않게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였다. 그런데도 접근하기 힘든 이유는

첫째, 고문피해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며 기억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풍부하지 못하고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둘째,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 고문에 의해 자존심, 명예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기 싫어한다.

셋째, 사회의 인식 때문에 가족들이 숨기기도 한다. 후유증을 이야기하여도 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이다.

올해 고문방지조약이 발효되었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까지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질문

■ 외국의 경우 고문가해자들이 처벌된 경우가 있는가?

-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나치전범들에 대한 처벌이다. 서구에서는 부족하나마 고문금지조문이 세밀히 명시되어 있고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정착되고 있다. 단 아직도 미국에선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이라든지 제3세계국가나 남미 등지에서 군사독재하에서 벌어진 고문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 실정이라 한다.

■ 우리 나라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고문방지조약이 87년에 발효된 이후 88년에 30개국이 가입했다. 우리 나라는 88년 노태우정권 때 가입한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 고문이 늘 자행되는 인권오명국으로 꼽혀있었기 때문이다. 즉 외교적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당시 노태우는 우리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순방때마다 한국에는 정치범이 한 명도 없다고 떠들었다. 또한 박종철사건이 있던 87년 당시 재야나 법조계에서는 고문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내법과 너무 많이 상충되어 91년 사회권 조약, 시민권 조약에 가입하고도 고문방지조약은 가입을 기피하였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며, 미국 역시 작년에 가입했다.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그 조약안에 '형사 관찰권'이란 것이 있어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고문가해자인 아군인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미국정부측에 이근안을 잡아서 인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고문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고문당했다고 제소해서 미국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요청하면 불러들일 수도 있다. 또 개인인 경우 고문당했다고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획기적인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 당하다고 보고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나 고문에 한해서는 주권이나 국내를 떠나 전세계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가입한다고 말은 했지만 6공 당시 역공당할 상황이 많았기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이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그 얘기가 나왔다. 정부는 93년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한승주외무장관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가서 이를 약속했다. 외무부는 외교적 목적과 수단으로 가입을 생각했지만 안기부와 법무부는 법적 절차, 형사절차가 복잡해진다면 가입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한승주외무장관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93년 2월 8일 결국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된다.

출처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 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여성관련국제조약

신혜수 (한일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 머릿말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될 때부터 여성의 성차별의 현상을 인식하고 남녀평등권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유엔 설립 직후 인권위원회(CHR)를 설치하면서, 일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산하의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에서 다루도록 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여 1946년 6월 여성지위원회(CSW)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성에 의한 차별문서를 취급하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제안, 권고 및 보고를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남녀평등에 관련한 유엔활동의 대부분은 이 여성지위원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조치는 유엔이 설립 초기부터 남녀평등 실현원칙을 중요시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에서도 여성문제가 계토화되어 왔으며, 유엔에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과 배치도 성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여성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5년 멕시코에서의 제1차 세계여성회의의 영향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후 1980년 제2차 코펜하겐회의, 1985년 제3차 나이로비회의, 그리고 금년 1995년 제4차 베이징회의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어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각종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해 각국이 해야 할 임무를 규정하였다.

모든 국제조약은 비준당사국이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관련 국제조약도 한국이 비준한 것은 한국정부가 지킬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선언이나 행동강령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선언이나 행동강령은 유엔총회나 특별한 주제를 토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엔회의에서 채택된다.

2. 여성관련 조약

여성관련 조약을 논의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인권에 관련되는 일반조약이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2가지의 국제인권규약이다. 이 4가지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조약

- 유엔헌장(1945) : 성(인종,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1948)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녔고,
성별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지녔다.
또한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결혼에 있어서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모성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A 규약
모든 사람의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권리를 제자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과 같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의 보호, 유급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1966): B 규약
임산부의 사형집행 금지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권
차별없는 공공생활에의 참여 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과 무차별의 원칙 선언

2) 여성관련 조약 및 선언 · 행동강령

-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협약(1949)
- 여성의 정치적 권리협약(1952)
- 노예제, 노예매매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습의 금지에 관한 보충협약(1956)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 혼인에의 동의, 혼인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62, 1965)
-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 메시코선언, 세계여성행동계획(197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발효는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1985.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for the Year 2000)

*여성폭력철폐선언(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중요 표시)

참고자료로는 한국여성개발원(1994),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국내 법의 입법과제와 정비방향의 제사-, 94 연구보고서 200-5: 정무장관(제2)실(1994), 유엔과 여성(1)-유엔주권 세계회의 주요문서 여성관련 사항-, 정책자료 94-10: 신혜수(1994), “여성인권운동의 국제화와 한국화”, 이화사회학연구회 편,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pp 149-178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세계여성회의 이후 유엔에서는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었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1979년 12월 18일 제34회 유엔 총회에서 찬성 130, 반대 0, 기권 10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내포된 남녀평등원리는 유엔이 설립된 이래 발표된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선언, 세계여성행동계획과 같은 선언 및 조약 그리고 ILO를 비롯한 국제기관에 있어서 수년에 걸쳐 논의되어 왔던 여성노동을 둘러싼 제 문제에의 기본자세를 재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즉, 협약은 현대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형태로 표명하고 있는 국제문서이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을 철폐해야 할 4가지 이유로서 (1) 여성차별은 권리평등·인간의 존엄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2) 여성차별은 국가의 각종활동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3) 여성차별은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 (4) 여성차별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의 개발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67년의 여성차별철폐선언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협약은 여성차별철폐선언과 비교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외에도 1967년 선언의 채택된 후 12년간에 제기된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에 수반하여 생긴 이념의 발전이 현저한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

러진다.

남녀평등의 법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 협약은 전통적인 남녀역할 분담이 성차별의 근원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남녀의 특성론·역할론을 극복한 남녀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즉 협약은 사회에 대한 여성역할의 확대와 가정에서의 남성역할의 확대의 도모라는 새로운 여성관 내지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협약이 전문(前文)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시하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과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본문에서 당시국이 남녀의 특성론과 성별역할분업을 변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제5조) 그리고 고용분야에서 남녀가 모두 가정과 사회의 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동조건을 창출하여야 하며 특히 보육시설의 충실통 부모가 가정과 직장의 책임, 사회활동에의 참가를 양립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제11조 2e)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등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자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규정은 협약이 직접적 성차별 뿐 아니라 성차별의 의사는 없어도 행위의 결과로써 성차별의 효과를 발생하는 간접적 성차별 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별을 초래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 이를 배경으로 하는 법제와 그에 기초한 사실, 결과 모두가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시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여(제4조 1항) 특징성에 대한 잠정적인 특별유대조치를 성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잠정적 특별유대 조치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의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즉, 단지 남녀동일임금조약이나 직장 차별에 관한 조약, 또 종래의 산전산후휴가와 그 밖의 모성보호법규만으로는 여성노동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직장, 사회, 가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평등사상을 표현하는 협약은 구체적으로 첫째, 남녀노동자 모두가 가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둘째, 무상으로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온 노동자 가족의 사적 노동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사회서비스나 사회시설, 공적부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협약은 “당시국이 모성(maternity)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2항) 모성보호도 여성차별에 대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모성보호를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임신, 출산 가능의 보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여성의 특별보호와 구별하고 있다. 협약은 후자에 대해서는 남녀공통의 보호로 하고 있다.

다섯째, 협약은 차별적인 법률이나 제도의 폐지를 통한 법률상의 평등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은 법적 평등(de jure equality)에 대응한 개념이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결과의 평등의 개념보다는 광의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차별이 없는 상태, 즉 인적 구성에서의 수량적 균형만이 아니고, 남녀역할 분담의식이나 제도가 변혁되어, 모든 영역에서 성(性)에 의한 정형화가 소멸되고 개인이 성별로 파악됨이 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기의 능력이나 의욕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 및 그를 보장하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협약은 차별의 근원인 성별역할분업에 근거한 제도 및 관습, 관행, 의식의 개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협약은 법적 차원에서의 형식적인 남녀평등의 보장만이 아니고,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사적영역에 까지 개입하고, 차별적인 관습이나 관행, 개인간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남녀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남녀평등권을 차별로부터의 소극적 배제에서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의 전개에 의해서 실현하여 가는 것, 즉 사회권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일곱째, 협약은 전문(前文)에서 남녀평등과 바람직한 사회질서나 국제질서의 실현이 상호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사회구조와의 상호관련의 인식으로 인해 협약 전문은 여성차별의 철폐를 위해서는 빙곤의 상황에서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렵다는 것,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필요하다는 것,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지주의, 외국의 침략 및 점령,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국제긴장의 완화 및 국가간의 상호협력, 완전한 군비축소 및 국가간의 상호협력, 완전한 군비축소 및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과 호혜, 국가의 주권의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세계사적 모순과 결부시켜 파악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세계여성회의 참가가 전체 참가국의 2/3가 될 정도로 중대함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제격차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차별의 결과로 파악하고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세계적 연대하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협약은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맹국에게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통해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상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심의와 권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1조). 한편, 협약은 고용과 사회보장분야에서의 남녀평등실현